

의안번호	제 384 호
의 결 연 월 일	2012년 9월 일 (제314회)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권기수 의원 외 6명
발의연월일	2012년 8월 31일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기수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2년 8월 31일

발 의 자 : 권기수 · 정 현 · 황규철 · 김도경

유완백 · 윤성옥 · 이수완 의원(7명)

의안 번호	384
----------	-----

1. 제안 이유

-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 및 금융환경 속에서 도민이 경제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운용중인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명칭변경(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나.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 개정(안 제2조)
- 다. 경제교육센터의 사업 종료 후 실적보고서 제출 조항 신설(안 제7조의1)

3. 조례안 : 불 입

4. 관계법령 발췌 : 불 입

5.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부서 협의 : 경제통상국 생활경제과와 협의

7. 입법예고사항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중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제2조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7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1(실적보고서 제출) 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교육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경제교육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충청북도의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3. “경제교육인력”이란 경제교육을 실시하거나 경제교육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p> <p>나. ~ 라. (생략)</p> <p>제3조 ~ 제7조(생략)</p> <p><신설></p>	<p>3. ----- ----- ----- ----- ----- -----.</p> <p>가. 「<u>유아교육법</u>」 제2조, 「<u>초·중등교육법</u>」 제2조----- -----</p> <p>나. ~ 라. (현행과 같음)</p> <p>제3조 ~ 제7조(현행과 같음)</p> <p><u>제7조의1(실적보고서 제출) ①</u> <u>제7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교육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경제교육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② 충청북도의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p>

관 계 법 령

□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경제교육을 주된 업무나 부수적 업무로 하거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나. 경제교육인력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3. "경제교육인력"이란 경제교육을 하거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나. 경제교육단체의 연구원

다. 그 밖에 경제교육을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제11조(실적보고서의 제출)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 기관과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경제교육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